

동성동본 결혼 허용

현재, 금혼조항 헌법불합치 결정...8촌이내 규제는 유지

동성동본 사이에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3·26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동성동본이어서 혼인신고를 못한 최상한씨 부부 등 8쌍의 부부가 낸 민법 809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동성동본간 혼인을 규제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동성동본 부부들이나 예비부부들이 이날부터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혼인을 할 때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까운 친척 사이의 혼인은 이미 민법 815조에서 부·모계 8촌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넘는 혼인은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법 809조 1항은 혼인의 범위를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혼조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가 98년 12월31일까지 민법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99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씨 부부 등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함께 위헌법을 제청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95년 5월 헌재에 동성동본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익겸 기자